

◆ (사)한국조경학회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지정을 위한 정관 개정(안)

1. 학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었던 사항으로,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18. 2. 13.이후부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 '18. 2. 13. 이전 해당단체는 '20. 12. 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당연 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2. 21년부터 『정부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와 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 단체』 등은 '20년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되지만, 21년부터는 국세청장(관할세무서에 신청)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아야 함.
3. 공익법인 미지정 시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능, 기부재산에 대한 본 학회의 증여세 납세 의무, 기부자에게 세제혜택 제공 불능 등의 문제 발생
4. 공익법인 지정을 위해 인정불가 사례 문구(회원간 친목도모 및 유대성 강화)가 포함된 (사)한국조경학회 정관의 제2조(목적)을 개정하고자 함

◆ 정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 2조 (목적) 본회는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한 제반 연구와 <u>회원들의 지위향상 및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u>	제 2조 (목적) 우리 학회는 국토환경과 조경 관련 연구와 기술 개발, 교육과 문화 교류를 통해 건전한 조경문화를 형성하여 국민 건강과 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목적)에 인정불가 사례 문구(친목도모 및 유대성 강화)를 제외하고 내용을 개정함	